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3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부패영향 평가결과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내용들을 보완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안 제15조제1호)**

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사실상의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군계획위원회 심의기준 완화)하여 주민불편해소에 기여코자 함.**(안 제19조제4항)**

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
(안 제53조제3항, 제58조제5항)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변경 및 군수에게 위임된 내용들을 보완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하여 중소기업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안 제12조제1항, 별표1 내지 별표22, 별표24)**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10.01.14 ~'10.02.05)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참고사항

○ 규제심사 : 해당부서와 협의완료

○ 예산관련 : 해당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제15조제1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연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연면적 250㎡이하의 건축물”로 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를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재산)관리부서 협의 후 인·허가하고, 연면적 250㎡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1항 각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율은 제1항 각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별표1 내지 별표22, 별표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7. 8.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개정 2007. 8.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개정 2007. 8. 2, 2009. 10. 15〉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개정 2007. 8. 2, 2009. 10. 1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4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개정 2007. 8. 2, 2009. 10. 1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5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개정 2007. 8. 2, 2009. 10. 15〉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6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개정 2007. 8. 2, 2009. 10. 15〉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7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 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하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개정 2007. 8. 2, 2009. 10. 15〉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7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개정 2007. 8. 2, 2009. 10. 15〉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9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개정 2007. 8. 2, 2009. 10. 15〉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0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개정 2007. 8. 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1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개정 2007. 8. 2, 2009. 10. 15〉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2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개정 2007. 8. 2, 2009. 10. 15〉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3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나.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개정 2007. 8. 2, 2009. 10.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4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개정 2007. 8. 2, 2009. 10.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개정 2007. 8. 2, 2009. 10. 15〉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6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개정 2007. 8. 2, 2009. 10. 15〉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개정 2007. 8. 2, 2009. 10. 15〉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8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개정 2007. 8. 2, 2009. 10. 15〉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9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제2호 자목(1) 부터 (4)까지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개정 2007. 8. 2, 2009. 10. 15〉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0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 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개정 2007. 8. 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별표 22】〈개정 2007. 8. 2, 2009. 10. 15〉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자목 (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4】〈신설 2007. 8. 2〉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별표 19 제2호 나목, 다목, 차목 및 별표 23 제2호 나목,다목,카목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4차선의 개설도로는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생략) 1. ~ 2.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2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생략)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 6. (생략)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현행과 같음) 1.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 ---------- 2. ~ 6. (현행과 같음)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생략) 1. ~ 3. (생략) 4.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연면적 250㎡이하의 건축물---- ---------- ---------- ---------- ---------- 통행에 지장 이 없는 경우 도로(재산)관리부서 협의 후 인·허가하고, 연면적 250㎡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 할 수 있다.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략) 1. ~ 21.(생략) ② (생략) 〈신 설〉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1. ~ 21.(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1항 각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 (생략) 1. ~ 21.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신 설〉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 (현행과 같음) 1. ~ 2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율은 제1항 각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